

행정자치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고성군

관 련 자 ① 고성군 ○○○○○○단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② 고성군 ○○○○과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1. 30.부터 2014. 9. 1.까지, ○○○과에서 휴직중인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10. 11. 1.부터 2015. 1. 13.까지 ○○○과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업무의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1조에 따르면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별표1¹⁷⁴⁾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43조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(개정 2012. 5. 16.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2-10호)에 따라 아스팔트

174) 사업장의 분류기준

- 1종사업장 :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
- 2종사업장 :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
- 3종사업장 :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
- 4종사업장 :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

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은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로 산정 → ② ①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(EPA계수)를 적용하여 산정 → ③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계수를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산정한 오염물질 발생량 자료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순으로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환경부 질의회신¹⁷⁵⁾에서 신규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은 건조→선별→혼합시설이 밀폐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을 대기 EPA계수(14.4kg)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환경부에서는 시·도에서 신규 아스콘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시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이 달리 적용되어 아스콘 업체간 대기 종별 규모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¹⁷⁶⁾하여 위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였고, 강원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이를 각 시·군에 알려¹⁷⁷⁾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문 통보하였음에도

정부합동감사 시(2016. 9. 27.) 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

고성군 ○○○○과는 2013. 7. 10. (주)○○에서 계획관리지역인 고성군 ○○○면 ○○○○로 000-0번지에 4종의 아스콘제조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2013. 7. 18. 수리함에 있어

(주)○○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25.23톤/년¹⁷⁸⁾으로 1종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계획관리지역에의 입지를 제한하였어야 하나, 3번째 방법인 이론적 방법과

175) 아스콘 신규 공장 설립관련 질의회신 : 환경부 ○○○○과-0000호(2011. 7. 26.)

176) 아스콘제조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등 안내 : 환경부 ○○○○과-0000호(2012. 11. 8.)

177) 아스콘제조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등 안내 : ○○○도 ○○○○과-0000호(2012. 11. 12.)

178) 125.23톤/년 산출근거 :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(2012. 5. 16.,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9-41호)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EPA계수를 근거로(먼지 14.4kg/톤)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

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작성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(대기오염물질 발생량 9.51톤/년, 4종사업장)를 그대로 수리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물 설치 제한을 받는 배출시설이 설치되었다.

위와 같이,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물 설치 제한을 받는 1종사업장의 “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”과 관련하여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실무책임이, 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담당책임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관련규정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, 설치신고가 수리된 대기배출시설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